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길곡 윗마을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2.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보상 및 시행청	비고
길곡 윗마을소하천 정비사업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일원	소하천정비 L=1.02km	2020. 4월 ~ 2022. 6월	창녕군	

2. 보상대상물건 : 별첨(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함)

3.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0년 04월 부터 ~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나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2)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녕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m ²)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주택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 소유자와 개별협의를 의거 계약체결 후 보상금 지급

4.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 장소 : 창녕군청 안전치수과
- 이의신청방법 : 우편, 방문(이의신청양식 : 임의작성)

5. 기타사항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안전치수과 (☎055-530-1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